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절차의 추완

일정기간 내에 절차를 수행해야 할 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절차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주장, 입증하여 유효한 행위로 추완할 수 있다.

절차의 중단

당사자 또는 절차수행자에게 절차수행 불능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새로운 절차수행자가 나타나서 절차에 관여할 수 있을 때까지 법률상 당연히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절차의 보정

절차의 미비사항에 대한 특허청장의 보정명령에 의한 보정과 출원인 자신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두가지 보정이 있다. 특히, 실용신안(구법적용분)은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유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진보정이 가능하며 1년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심사청구와 동시에 또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기간내에, 거정사정에 대해 심판청구시에는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정할 수 있다. 실용신안(신법적용분)은 출원 후 2개월 이내에 자진보정이 가능하다. 디자인, 상표의 경우에는 사정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과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청구시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정이 가능하다.

전통지식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온 모든 지식을 총 망라하는 개념으로 전통의약, 전통치료행위, 식품, 농업, 환경 뿐만 아니라 문학, 음악, 무용, 미술 등 예술활동 등도 포함하고 있다. 전통지식은 공지된 지식으로서 신규성이 없다는 점에서 기존의 지식재산권과 구별된다. 전통지식 보유자에게 권리 및 혜택을 부여하여 공동체 지식을 보존하고 가치창조를 통한 사회, 경제개발 기회를 제공하자는 측면에서 보호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지식은 지식자체가 열등하고 비체계적인 것이 많으며 자료화되지 않는 상태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범주에 포함시켜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전통지식은 유전자원, 농부의 종자권보호, CBD(생물다양성협약) 등의 밀접한 연관을 맺고 보호여부 및 보호방법 등에 대해서 WTO(세계무역기구),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다. 유전자원, 전통지식을 많이 보유한 개도국 및 후진국을 중심으로 기존 지식재산권의 보호체계에 대응하여 보호필요성을 강도높게 주장하고 있다.

전통의학

천연물을 의약으로 이용한 것. 여기서 천연물이란 지구상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물, 식물, 광물, 미생물 등 모든 물질을 총칭하는 것으로 의학분야에서는 인간의 질병치료 및 예방에 약효를 갖는 천연물질을 지칭. 약용자원으로 개발 가능한 개체는 약 5000여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